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18. 8. .

국 토 교 통 부
(주택건설공급과)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준 및 에너지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그 중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여러 시설을 예시하여 권장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시된 여러 시설 중 자동집하시설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단계에서 생활폐기물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 발생됨. 또한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의견과 실제 운영단계에서의 문제 외에도 고장·악취·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집하시설의 문제를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저감하거나 에너지화하기 위한 시설의 예시 삭제(제6조 제8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그 양을 줄이거나”를 “분리수거 또는 감량화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p> <p>1. ~ 7. (생략)</p> <p>8. 폐기물의 재활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u>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그 양을 줄이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u></p>	<p>제6조(설계방향)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 --분리수거 또는 감량화하거나 ----- -----.</p>